

정 정 신 고 (보 고)

2018년 8월 30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간이투자설명서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년 5월 4일

3. 정정사유 :

- 환매수수료 삭제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 변경 반영

4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환매수수료 삭제	- 종류A, 종류A-e : 없음 - 종류C1, 종류 C-e :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	(삭제)
II. (1) 4. 운용전문인력	정기갱신	-	최근 결산일 기준 작성
II. (1) 5. 투자실적 추이 ※ 연도별 수익률 (세전 기준)	정기갱신	-	최근 결산일 기준 작성
II. (2) 2. 투자위험 등급 분류	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 변경 반영	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이 <u>12.20%</u> 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다소 높은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.	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이 <u>12.31%</u> 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다소 높은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.
III. (2) 전환절차 및 방법	환매수수료 삭제	- 판매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환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. 1.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. 수익증권 전환 후 환매청구	(삭제)

		하는 경우. (전환 후 추가 납입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 음.)	
--	--	---	--